

# 2024학년도 정기고사 부정행위 안내문

-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되며, 부정행위자와 협조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됨.
- 그와 별도로 학칙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, 그 행위가 잦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음.

1. 휴대폰, 스마트 워치, 블루투스 이어폰, 디지털 시계(타이머) 등 어떤 유형의 전자 기기<sup>1)</sup>이든 이를 고사 시간에 소지한 경우
2. 컴퓨터용 사인펜, 볼펜(흑색, 청색), 연필(샤프), 지우개,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둔 경우(건강상 사유로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확인 후 이용)
3. **본령 전 문제를 풀거나, 종료령 이후 필기구를 잡고 있는 행위**
4.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준비물을 가지고 있는 행위
  - 책상 위에 기록, 벽에 기록, 쪽지 돌리기, 컨닝페이퍼 소지,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주는 행위 등
  - 시험지와 동일한 재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이는 행위
  -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
  - 쓰레기(기름 종이 등)를 버리는 척하며 다른 학생이 줍는 행위
5. 말이나 암호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행위
  - 다 풀고 앞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,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,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하는 행위
  - 팔짱을 끼고 한 손으로는 문제 번호, 다른 한 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주는 행위
  -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(주로 기침)와 함께 일부 또는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주는 행위
  - 감독 교사에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주는 행위
  - 감독 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주는 행위
6. 예비령 이후 감독관의 지시에도 교과서나 공책 등 시험 관련 자료를 보는 경우
7. **감독 교사의 고사 진행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**
8. 감독교사가 배부하지 않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지참한 경우
9. 2장 이상의 시험지나 답안지를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한 경우
10. 좌석을 번호 순서로 앉지 않고 임의로 바꾸어 앉는 행위. 바꾸어 준 사람, 바꾼 사람 모두 부정행위자에 해당
11.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, 보고 쓰거나, 보려고 시도하거나, 타인이 보도록 유도한 경우
12.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
13. 고사 시간 종료 전에 임의로 퇴실한 경우
14. 고사 진행 및 응시생의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
15. 임의의 장소(화장실 등)에 관련 서류나 물품을 숨겨두는 경우
16. 기타 **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의심하거나 인지한 경우**
17. 민원 등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 후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

1) 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), 디지털 카메라, MP3플레이어, 태블릿 PC 및 노트북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통신·결재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,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